

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7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1월 23일

발의자 : 오지훈 의원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시행 2022. 1. 13.)으로 우리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변경 및 자구 정정 등
- 나. 「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」의 개정
 - 정책지원관 운영인원, 직급, 담당사무 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의2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」의 개정)

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41조, 제102조 및 제103조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,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
2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
3.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
4.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·조사의 지원
5.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
6.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

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.

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사무과에 배치한다.

⑤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7급 상당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.

제2조(「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6조 및 제62조”를 “제64조 및 제71조”로 한다.

제3조(「하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4조”를 “제42조”로, “제35조”를 “제39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의정활동비”란 영 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일비”를 “의정활동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해연도 일비”를 “당해연도 의정활동비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사망자의 호적등본”을 “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”로 하고, “지방자치법 제32조의 2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”로 한다.

제4조(「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4조·제45조·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”를 “제53조·제54조·제56조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제47조”를 “제56조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 제44조 및 제45조, 제47조”를 “법 제53조 및 제54조, 제56조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”를 “정례회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41조”를 “법 제49조”로, “법 제134조”를 “법 제150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27조”를 “법 제142조”로 한다.

제5조(「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1조”를 “제49조”로, “제52조”를 “제55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 중 “법 제146조”를 “법 제163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 제104조제2항”을 “법 제11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9조”를 “법 제13조”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법 제41조제5항”을 “법 제49조제5항”으로, “법 제27조”를 “법 제34조”로 한다.

제6조(「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중 “제113조 부터 제116조”를 “제126조 부터 제129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법 제117조”를 “법 제131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법 제146조”를 “법 제163조”로 한다.

제7조(「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8조”를 “제46조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35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43조”로 한다.

제9조의2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1호의 비위의 정도란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 중 “법 제36조제2항”을 “법 제4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3항”으로 한다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3항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1.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</u>에 하남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"정원"이라 한다)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지방자치법 제41조, 제102조 및 제103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,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.</u></p> <p><u>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</u></p> <p><u>1.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</u></p> <p><u>2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</u></p>
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지원</u></p> <p>3. <u>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</u></p> <p>4. <u>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·조사의 지원</u></p> <p>5. <u>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</u></p> <p>6. <u>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</u></p> <p>③ <u>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.</u></p> <p>④ <u>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사무과에 배치한다.</u></p> <p>⑤ <u>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7급 상당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.</u></p>
--	---

2.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<u>제56조 및 제62조</u> 에 따라 하남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64조 및 제71조</u> ----- -----

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----- 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3. 하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"령"이라 한다)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42조 ----- ----- 제39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"일비"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. 3. (생략) 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"의정활동비"란 영 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. 3. (현행과 같음)
<p>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	<p>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----- -----

<p><u>일비</u>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</p> <p>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<u>당해연도 일비</u>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[별지 제1호서식]</p> <p>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</p> <p>첨부서류 1.사망의 경우:<u>사망자의 호적등본</u> 1부</p> <p>상기자는 <u>지방자치법 제32조의 2</u>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</p>	<p><u>의정활동비</u>-----</p> <p>2. -----</p> <p>----- <u>당해연도</u></p> <p><u>의정활동비</u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지 제1호서식]</p> <p>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</p> <p>첨부서류 1.사망의 경우:<u>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</u> 1부</p> <p>상기자는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</p>
--	---

4.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·제45조·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·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/p> <p>-----<u>제53조·제54조·제56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2조(회의총일수)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</p>	<p>제2조(회의총일수) -----</p> <p>----- <u>제56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합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
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
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
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
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(회기) 법 제44조 및 제45조,
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
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
와 같다. 다만, 의회의 의결로
연장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제4조(정례회 집회) 「지방자치법
시행령」 제54조의 규정에 의한
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
와 같다. 다만, 그날이 공휴일인
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2. (생략)

제5조(정례회 심의) ① 제1차 정
례회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의
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
시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
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
부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
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

제3조(회기) 법 제53조 및 제54조,
제56조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정례회 집회) 정례회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정례회 심의) ① -----
----- 법 제49조 -----

----- 법 제150조-----

② ----- 법 제14
2조-----

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	----- -----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5.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(이하 "법" 이라 한다) <u>제41조</u> 및 동법시행령 <u>제52조</u> 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(이하 "의회" 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 사(이하 "감사"라 한다)와 행정 사무조사(이하 "조사"라 한다) 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49조</u> ----- <u>제55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 관)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· 2. (생 략) 3.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<u>법 제146조</u> 의 규정에 의한 지 방공기업 4. <u>법 제104조제2항</u> 또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 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 위 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 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	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 관) ①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법 제163조</u> ----- ----- 4. <u>법 제117조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기관, 다만, 본의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

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~ ③ (생략)

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-----.

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 ① ----- 법 제13조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법 제49조제5항-----

----- 법 제34조-----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6.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범위) ①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	<p>제2조(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·2. (생략)</p> <p>3.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 부터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</p>	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 제126조 부터 제129조--- ----- 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법 제131조----- -----</p>
<p>6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의회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관계</p>	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	----- -----.
1. <u>법 제146조</u> 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	1. <u>법 제163조</u> ----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
7. **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**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46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9조(겸직금지)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.	제9조(겸직금지) ----- <u>지방자치법 제43조</u> ----- -----.
제9조의2(겸직신고)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,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	제9조의2(겸직신고) ①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1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의원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, 검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
⑥ ~ ⑧ (생략)

제17조(징계 등)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.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.

1. (생략)

2. 검직을 하는 것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

-----.

②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3항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제2항-----

-----.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징계 등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제2항-----

3. ~ 6. (생략)

[별표 2]

징계기준

1. 겸직위반 신고

-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(법 제36조제2항 위반)

[별지 제1호서식]

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3항

[별지 제2호서식]

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3항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2]

징계기준

1. 겸직위반 신고

-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(법 제44조제2항 위반)

[별지 제1호서식]

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3항

[별지 제2호서식]

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3항